

【별지 제20호 서식】 <신설 2018.4.18., 개정 2019.10.31.>

### 상담기록관리부

(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)

상담일시	2020. 7. 8. 13시 경	상담유형	[ ] 방문 [x] 전화 [ ] 기타( )	
상 담 요청자	성명	김	생년월일	19
	소속/직위(직급)	팀/과장(4급)	연락처	010-

상담 내용

- 타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기고를 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

상담 결과

-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므로 사례금을 받은 기고 건은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한다고 보임.

**제 22 조 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

-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9.10.31.>
-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10.31.2020.5.25.>

2020 년 7 월 9 일

행동강령책임관

김 미 정

(서명(또는 인))